

통일 제 호



지역통일교육센터 지정서

1. 명 칭:
2. 소재지:
3. 대표자:
4. 주 소:

「통일교육 지원법」 제6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
따라 위 을(를)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통 일 부 장 관

직인